

1.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철도지하화와 이를 통해 확보된 철도부지 개발을 통합 추진하는 「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」이 제정(법률 제20177호, 2024.1.30. 공포, 2025.1.31. 시행)됨에 따라 중합계획의 고시 절차, 철도 지하화통합개발채권 발행 등을 위한 서식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2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국토교통부령 제 호

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

시행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중합계획의 고시 등) 국토교통부장관은 「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5항에 따라 중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중합계획의 내용, 수립 목적 또는 변경 사유 등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3조(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등) ① 「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5조제1항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 매입확인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.

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.

③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.

제4조(검사공무원의 증표)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호
서식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 매입확인증				처리기간 즉 시
매입자	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)			
	생 년 월 일 (법 인 등 록 번 호)		전화번호	
	주 소			
역세권 개발 채권	기호 및 번호			
	매입금액	원정(W)		
	매입목적			
	제출기관			
	발행점포			
	발행일	. . .		
	상환일	. . .		
「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40조제1항에 따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을 매입하였음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				
년 월 일				
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의 장				
(문의처: 담당자 ☎)				
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 매입확인증은 멸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라도 재발행하지 아니합니다. 다만, 매입확인증이 철도지 하화통합개발채권의 매입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을 해당 철도지 하화통합개발채권 발행자가 확인한 경우에는 재발행할 수 있습니다.				수수료 없음

210mm×297mm(보존용지(2종) 70g/㎡)

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발급대장

210mm×297mm(보존용지(2종) 70g/m²)

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대장

210mm×297mm(보존용지(2종)70g/m²)

(앞쪽)

제 호

검사 공무원증

사 진

3cm × 4cm

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
뒤 그림 없이 6개월
이내 촬영한 것)

성 명
(영문명)

국토교통부

60mm × 90mm [보존용지(1종) 120g/㎡]
(색상: 연하늘색)

(뒤쪽)

검사 공무원증

소 속:
직위(직급):
성 명:
생년월일:
검사대상:
유효기간: . . .부터 . . .까지

위 사람은 「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」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귀하가 시행하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임을 증명함
년 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

직인

1.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.
2.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.